

# 2020년도 제12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자 : 2020. 7. 7.(화요일)
- 방 법 : 온라인심의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 김경숙 위원(분과위원장),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오영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의결안건〉 ※ 안건 검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37건(안건번호 제2020-64209호~64308호)
  - 회의결과: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고,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Ⅲ. 주요내용

- A 위원 : 심의 안전인 복제물은 모두 상업적인 목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음악저작물, 영상저작물(영화, 방송)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자 등 권리자가 아닌 개별 이용자들이 온라인을 통하여 저작물을 복제·전송할 수 있는 권원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포는 그 전파 속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합법저작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이번에 불법 복제 전송이 문제된 심의안전들은 음악, 영화, 방송 콘텐츠에 관한 것들로 그 중에는 (음악) 아로하 (가수 : 조정석), (영화) 리듬 오브 리벤지 (2020), (방송)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2 :대항해 시대 (2019)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모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한 점에서 검토보고서의 원안대로 모두 시정권고 가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C 위원 : 금번 심의대상 안전은 11개 온라인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137건의 복제물에 대한 것으로서, 안전번호 제2020-64209호~64233호(순번 1번~25번)는 최신 대중가요 음원파일에 해당하고, 안전번호 제2020-64234호~64233호(순번 26번~100번)는 국내외 최신영상물에 해당함. 이들 음악 및 영상물들은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써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들이라 보여짐. 그러나, 복제·전송을 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없는 자들이 이들 저작물들을 영리목적의 웹하드 혹은 모바일 웹하드 사이트에 사전허락없이 게시한 결과, 이들 저작물들은 불법복제물로 판단됨.

그 결과 저작권자가 얻어야 할 경제적 수익을 박탈함으로써 합법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제133조의3에 근거하여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물의 유통이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된다는 측면에서 복제 전송의 중단과 삭제의 시정권고를 가결함. 다만, 이미 삭제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이 타당할 것임.

- D 위원 : 본 사건은 웹하드사이트(◆◆◆, ☆☆☆ 등)에 불법복제물(음악, 방송, 영화)들을 불법 공중송신한 사건으로 당해 복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해당이용자들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2020년 제129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7. 20.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성호

위원 박정인

위원 오영주